

##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화예술위원회 규정

2016.09.29. 제정

**제1조(설치)**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의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사항
2. 평창 스페셜 뮤직 &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
3. 국외 문화예술공연의 파견에 관한 사항
4. 외부 출연자 및 예술단체의 섭외·협력 등에 관한 사항
5.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2인
3. 위원 15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

한다.

**제7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9조(회의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0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2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본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3조(분과위원회)** 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클래식, POP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 (2016. 09. 29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